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 동의(안)】

영 주 시

영주시 도시계획세부과지역 고시 동의(안)

의 안 번 호	192
------------	-----

제출년월일 2001.
제출자 영주시장

1. 제안이유

금년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 같은법 제238조제2항 및 영주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함

2. 주요골자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콜트장·유원지 기타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

3. 내용

【도시계획세부과지역】

구 분	부 과 지 역	면적(m ²)
계		47,375,000
영주지구	하망, 영주 전지역 상망, 휴천, 조암, 적서, 가흥, 문정, 고현, 상줄 일부지역	30,000,000
봉기지구	봉기 성내, 동부, 산법, 금개, 고촌, 서부 전지역 및 백리 일부 봉현 오현, 두산 일부지역	13,100,000
무석지구	임곡, 소천 일부지역	4,275,000

※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내역과 동일함

4. 참고자료

가. 관리법령(별첨) : 덧붙임 1부

나. 도시계획세부과지역 예고 결과

- 1) 건명 : 영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
- 2) 예고기간 : 2001. 2. 26~2001. 3. 17(20일간)
- 3) 예고방법 : 영주시보(2001.2.26제227호) 게재 및 행정예고판 게시
- 4)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5. 기타

영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 고시 동의(안) 1부:붙임

영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 동의(안)

【취 지】

우리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도시계획세 부과 징수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을 고시하고자함.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내역】

구 분	부 과 지 역	면적(m ²)
계		47,375,000
영주지구	하망, 영주 전지역 상망, 휴천, 조암, 적서, 가흥, 문정, 고현, 상줄 일부지역	30,000,000
풍기지구	풍기 성내, 동부, 산법, 금계, 교촌, 서부 전지역 및 백리 일부 봉현 오현, 두산 일부지역	13,100,000
부석지구	임곡, 소천 일부지역	4,275,000

*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내역과 동일함

【관련 법규】

- 지방세법 제235조 및 제238조
- 영주시 세조례 제84조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법

- 제235조 【과세대상】**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부과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외의 토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238조 【부과징수】** ①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영주시시세조례

-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의 안

- 의안번호 : 제192호
- 의 안 명 : 영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 고시 동의(안)
- 해당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과

2. 제안이유

금년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 같은 법 제238조제2항 및 영주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

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구 분	부 과 지 역	면적(m ²)
계		47,375,000
영주지구	하망, 영주 전지역 상망, 휴천, 조암, 적서, 가흥, 문정, 고현, 상줄 일부지역	30,000,000
풍기지구	풍기 성내, 동부, 산법, 금계, 교촌, 서부 전지역 및 백리 일부 봉현 오현 두산 일부지역	13,100,000
부석지구	임곡, 소천 일부지역	4,275,000

*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내역과 동일함

4. 김 토의견

- 영주시 도시 계획 세부과지역 고시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부과대상으로 하며,
 - 지방세법 제238조 및 영주시 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대상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임.
 -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구 분	부 과 지 역	면적(m ²)
계		47,375,000
영주지구	하망, 영주 전지역 상망, 휴천, 조암, 적서, 가흥, 문정, 고현, 상줄 일부지역	30,000,000
풍기지구	풍기 성내, 동부, 산법, 금계, 교촌, 서부 전지역 및 백리 일부 봉현 오현, 두산 일부지역	13,100,000
부석지구	임곡, 소천 일부지역	4,275,000

- 본 동의(안)을 검토한 바
 - 본 동의(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235조, 같은법 제238조 및 영주시 세조례 제84조에 근거하며,
 - 2000년도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내역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001. 4.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순